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나4048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결 2020. 3. 19.

판결 선고 2020. 4. 9.

제 1 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8. 선고 2019가소20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변호사인 피고와 사이에, 2018. 7. 17. C이 D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14661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고 그 착수보수금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같은 달 25. C이 E 외 2인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하 '이 사건 형사고소 사건'이라 한다)의 처리를 위임하고 그 착수보수금 3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소 시 성공보수금 4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위임계약에 따른 착수보수금으로 2018. 7. 17. 350만원, 같은 달 25. 200만 원, 기타 신용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C이 상고한 대법원 2018다248978 사건의 상고이유서 작성을 부탁하였고, 피고가 작성한 상고이유서를 2018. 8. 6.경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14661 사건의 처리를 위임할 당시 위 사건은 같은 법원 2018머552086호로 조정 절차에 회부된 상태였는데(이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14661 사건과 위 조정 회부된 사건을 합하여 '이 사건 민사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위 민사사건의 2018. 7. 19.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2018. 8. 23. 담당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위 민사사건은 C이 2018. 8. 27. 소를 취하함으로써 종결되었다.

마. 이 사건 형사고소 사건은 2018. 8. 17.경 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에 송치되었는데, 피고는 2018. 8. 23.경 위 형사고소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위 형사고소 사건은 2019. 2. 26.경 피고소인들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종결되었다(피고소인 E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고소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이 반영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나머지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소인 F에 대한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모두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을 3,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민사 및 형사고소 사건에 관한 각 위임계약은 피고가 아래와 같이 변호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함으로 써 해지되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① 이 사건 민사사건을 정식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하기로 원고와 구두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조정절차에 의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② 의뢰인인 원고의 연락이나 면담을 회피함으로써 원고의 의사가 반영되지 아니한 내용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③ 수임한 사건에 대한 조사나 법률적 검토를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원고가 제공한 소장, 준비서면, 진술서등을 그대로 차용하여 준비서면과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④ 형사고소 사건의 고소인조사기일에 고소대리인으로서 참여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민사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은 피고의 수임거절 의사표시에 원고가 동의함으로써 합의 해지되었거나 무효이다.

()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해지된 점에 비추어, 위 각위임계약에서 약정한 보수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상 부당하게 과다하다.

(2) 피고가 위와 같이 위임계약 상의 사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하고, 위임사무처리 과정에서 의뢰인인 원고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행을 함으로써 원고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3)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민사 및 형사고소 사건에 관한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계약 상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이 사건 민사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이 피고의 수임거절 의사표시에 따른 원 · 피고 사이의 합의로 해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위임계약에 기한 변호사 보수약정이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착수금은 위임사무인 소송사건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수임사건이 실패하였거나 예상하였던 기간보다 단기간에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점, 피고가 이 사건 민사 및 형사고소 사건을 수임한 후 조정기일에 출석하거나 준비서면,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고, 그 준비서면 등의 내용이 원고가 제공한 참고자료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임계약 상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원고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은희, 판사 김은교, 판사 김지영